[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-91호]

2021년 2차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사업 공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
2021년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시행을
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9월 24일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2021년 2차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사업 공고

■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■

<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>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1 혼인관계증명서

① 발급받으실 때

- 기혼/미혼과 관계없이 **모든 신청자**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- 사업 **공고일 이후 발급**받은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
- 혼인관계증명서 중 **일반증명서** 발급
- **주민등록번호(뒷번호 6자리) 전부 공개**하여 발급
-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**발행번호가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**(좌측 하단)

② 스캔 · 촬영하실 때

-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**인쇄·출력 후** 스캔·촬영
- 스캔·촬영 시 **서류 전체가 보이도록** 스캔·촬영하여 제출

③ 개명하셨거나 성(姓)이 두음법칙으로 달라져서(류길동 → 유길동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상의 이름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

- 심의(소득인정액 조사) 불가로 심의에서 제외
-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 정정 절차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

2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· 조회 및 확약동의서

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성명, 동의여부 표시,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

② 미혼 신청인(1인가구)은 서면 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

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 중 동의 · 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 추가 제출 필요

※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,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**<시행지침>** 및 **<산정안내서>** 에 기재되어 있으니 **숙지 후 사업신청** 부탁드립니다.

1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이란?

○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○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**생애 중 1회에 한하여**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○ 사업의 부제인 '창작씨앗'은 '예술인이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'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
2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**(신청 기간)** 2021년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 신청기간

회차	공고	온라인 신청 기간		선정 인원
		시작	마감	
2차	9월 24일(금)	10월 1일(금) 10:00	10월 7일(목) 17:00	1,572명

* 신청 마감 주차에는 접속자가 증가하여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**조기 신청 권장**
* 마감일 17: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마감 기한까지 신청서의 '신청 완료' 여부 확인 필수

○ **(결과 발표)** 2021년 11월 둘째 주(예정)

□ 신청방법

○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kawf.kr)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, **온라인으로 2회(1차, 2차)에 한하여 신청**

-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며, 증빙 서류는 반드시 **발급·출력**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**이미지 파일**로 각 항목에 첨부하여 제출

□ 제출서류

○ 각 서류의 발급·구비처 및 양식·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

○ **(공통필수)** 신청 방법·자격 등과 무관하게 **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**

-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**
  * 당해 연도 해당 사업 **시행지침에서 제공**하는 서식 사용
- **혼인관계증명서(일반) 1부**
  *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
  *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
  *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(직인 날인 확인) 해야 하고,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
  * 상기 기술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진위여부 등이 확인 불가 할 수 있음.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숙지 요망
  * 혼인관계증명서 상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은 <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> 필히 숙지 요망
- **통장 사본 1부**
  * 신청인 개인 명의 계좌

3 참여 자격

□ 참여 대상

○ 아래 각 호가 **모두 해당**되는 예술인

- **(예술활동증명)**「예술인복지법」상 **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** 완료한 예술인 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)
  * **(유효기간)**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
- **(소득인정액)**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*의 소득인정액*이 당해연도 **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***인 예술인
  * **(소득인정액)*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  * **(가구원 범위)**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
  * **(기준 중위소득 120%)** 1인 가구 2,193,397원,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
- **(고용보험)**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**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**

□ 참여 제한 대상

○ 아래 각 호 중 **하나가 해당**되는 예술인

- **(예술활동증명)** 사업 신청일로부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
  *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 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 및 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
- **(연령제한)** 만 19세 미만 예술인
- **(고용보험)**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**구직급여 수급 예술인**
-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

○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**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**하는 예술인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
금액(원/월)	2,193,397	3,705,695

- **(소득인정액)*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  *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배율 적용 후 산정

○ **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시행지침 참조)**

□ 유의사항

○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**<시행지침>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**

○ **(사회보장)*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

○ **(고용보험)** 당해 연도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불가

-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(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참여제한 동일 적용)

○ **(중복수혜 및 중복참여)**

- 정부지원금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·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하며,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**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**

  * (예시) 고용노동부 **「청년구직활동지원금」**은 해당 부처에서 해당 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어,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

  * 명시된 기관·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·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, 중복 신청(또는 선정)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

-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기존의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참여에 제한

중복 참여 제한 사항

• '21년 1차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'21년 2차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 및 '22년 상·하반기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참여 제한

4 심의 및 결과 안내

□ 심의

○ **(심의방법)** 신청서 및 제출 자료 완비자에 한하여 행정심의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·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
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예술인 대상 **소득인정액이 낮은 순**으로 선정

  * **(기준 중위소득 120%)** 1인 가구 2,193,397원,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

  * 자격을 충족한 우선 선정 인원 제외 후 선정

○ **(우선선정)*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(등급·종류 무관)

○ **(우선순위)** 각 사업의 지원 가능 인원 초과에 따른 소득인정액 동액 대상자 경합 시 소득평가액이 낮은 가구와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를 차례대로 우선순위로 선정

  * 1, 2순위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농·어촌지역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며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□ 결과 발표

○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(SMS/LMS),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,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

□ 의무사항

○ **(활동보고)**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, 승인을 득해야 함

  * **(기간)** 결과 발표 후부터 당해 연도까지이며, 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 별도 안내

  * **(승인)** 제출 순으로 수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승인 여부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정 로그인 후 수시 확인 해야하며, 보완 대상자는 매월 말 안내됨

  - **보고서 미승인*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**

    *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

○ **(모니터링)**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, 모니터링,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

5 문의

○ **(유선)**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)3668-0200

○ **(인터넷)**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

6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

□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.

- ㅇ 소득,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ㅇ **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**(www.kawfartist.net)**의 '소득인정액 모의계산'메뉴를 참고**하시기 바랍니다. 단,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 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, 산정될 소득·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□ 장애 예술인입니다.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, **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·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**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인 경우 **우선 선정**합니다. 이때,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.

□ 미혼입니다.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,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때, 상세가 아닌 '일반'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- ㅇ **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.**